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종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08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김종길, 강석주, 경기문,
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
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
김성준, 김영철, 김용일,
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
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
민병주, 박 석, 박성연,
박영한, 박춘선, 박환희,
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
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
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
윤종복, 이경숙, 이봉준,
이상욱, 이성배, 이종배,
이종태, 이종환, 임규호,
정지웅, 최민규, 최진혁,
허 훈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51명)

1. 제안이유

- 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
- 이에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용적률을 250퍼센트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55조제1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, 국민임대주택, 행복주택, 장기전세주택,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,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400퍼센트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국민임대주택, 행복주택, 장기전세주택,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,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400퍼센트 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4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5조,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

다. 기타 : 없음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제4항제3호 중 “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”을 “노인복지주택·오피스텔”로 한다.

제55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 제2호의 국민임대주택, 제3호의 행복주택이나 제4호의 장기전세주택 또는 임대산업시설을 확보하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(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)의 용적률은 400퍼센트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주택, 제3호의 행복주택이나 제4호의 장기전세주택 또는 임대산업시설을 확보하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및 제5호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(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)의 용적률은 400퍼센트로 한다.

⑤~㉔ (생략)

⑤~㉔ (현행과 같음)